

검 토 보 고 서

〈 전문위원 최종익 〉

1. 안 건 명

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(보건소)

2. 안건번호

가. 의안번호 : 제19-58호

3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1일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4. 회부일자

가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일

5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I 예산규모

1 마포구 추경예산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가경정 예산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감율
합 계	663,356,562	637,378,160	25,978,402	4.1%
일 반 회 계	581,028,307	556,947,370	24,080,937	4.3%
특 별 회 계	82,328,255	80,430,790	1,897,465	2.4%

II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 (일반회계)

1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비 고
합 계	8,680,352	8,489,481	190,871	
지 역 보 건 과	7,568,806	7,399,125	169,681	- 국고 및 시·도비 보조금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난임부부지원
의 약 과	1,111,546	1,090,356	21,190	- 국고 및 시·도비 보조금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

2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가경정예산	기정 예산액	증(△)감	증감률
합 계	19,401,229	17,550,882	1,850,347	10.54%
보 건 행 정 과	1,740,839	1,662,496	78,343	4.71%
위 생 과	219,847	219,795	52	0.02%
지 역 보 건 과	14,023,183	12,381,579	1,641,604	13.26%
의 약 과	3,417,360	3,287,012	130,348	3.97%

3 구재원 투입 자체사업 (1개 사업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사업명	당 초 예산액	추 경 요구액	최 종 예산액	추경사유
	총 계		0	14,240	14,240	
1	보 건 행 정 과	해충퇴치기 설치 운영	0	14,240	14,240	각 동 공원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여 위생 해충 구제 및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감염병 예방

4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 (9건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사업명	추경 요구액	추경사유
	총 계		1,836,107	
1	보건 행정과	보조금 반환	64,103	한센인피해사건생활금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10개 사업 국고 및 시·도보조금 반환
2	위생과	보조금 반환	52	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보조사업 잔액 등 총 2개 사업 국고 및 시·도보조금 반환
3	지 역 보건과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	224,120	사업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
4		임산부 인플루엔자	33,734	사업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
5		치매안심센터 설치	200,500	국시비 보조금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미확보 구비 매칭분 편성(국50%,시25%,구25%)
6		보조금 반환	1,183,250	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등 총 43개 사 업 국고 및 시·도보조금 반환
7	의약과	물리치료사 인건비	15,354	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확충
8		재활보건사업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감	17,246	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력확충
9		보조금 반환	97,748	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2개 사업 국고 및 시·도보조금 반환

Ⅲ 검토의견

①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구재원 투입 자체사업

- 마포구 전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,373억 7,816만원에서 259억 7,840만 2천원이 증가한 6,633억 5,656만 2천원임.
- 한편, 보건소 추경예산규모는 194억 122만 9천원으로 마포구 전체 추경 예산의 2.92%이며, 보건소 최종 예산은 금번 추경편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.54%가 증가되었음.
- 구 재원 투입 자체사업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보건 행정과 1건으로 “해충 퇴치기 설치 운영”을 위해서 추경요구액 1,424만원을 증액하였음.

②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추경편성

-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보건소 소관 추경편성은 총 9건 18억 3,610만 7천원임.
- 먼저, 지역보건과 소관은 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” 등 4건으로 추경요구 주요 사유는 국·시비 확정 내시액 및 국고 및 시·도보조금 반환 금액 등이 증가되었음.
- 다음, 의약과 소관은 “물리치료사 인건비” 등 3건으로 추경편성 주요 사유는 우리구 관내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물리치료사 등 재활사업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.

③ 검토 종합의견

-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 내 해충 퇴치기 설치 운영 자체사업과 국·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액 반영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